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1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7

발 의 자:허 영·인재근·이형석

이용빈・황 희・김영배

문진석 · 김정호 · 전재수

위성곤 · 김윤덕 · 김성환

신정훈 · 김성주 · 이용우

김원이 · 서삼석 · 임오경

임호선 · 이소영 · 허종식

김민철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-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예 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국회 예·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·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).
- 나.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).
- 다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(안 제34조제9호의2 및 제71조제6호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1024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3"을 "제73조의4"로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에는 기후변화의 완화 기대효과,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기후변화인지 예산서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2(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 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기후변화의 완화 효과분석

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2"를 "제68조의2, 제68조의3"으로 한다.

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8조의3(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금 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기후변화의 완화 기대효과,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

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,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3(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기후변화의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기후변화의 완화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후변화인지 예·결산서,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, 제34조제9호의2, 제5 7조의2, 제68조의3,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 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3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4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6조의2(기후변화인지 예산서
	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
	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
	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
	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에는
	기후변화의 완화 기대효과, 성
	과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	③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
	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. ~ 16. (생 략) <신 설>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, <u>제68조의2</u>,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. 다만,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
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기후변화인지 예산서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57조의2(기후변화인지 결산서
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
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
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
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결산서"
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에는
집행실적, 기후변화의 완화 효
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
<u>야 한다.</u>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제68조의2,
제68조의3
, 

항,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운용계획반증"이라 "기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

 제68조의3(기후변화인지 기금운
<u> </u>
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
<u>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</u>
"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
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
<u>다.</u>
②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에는 기후변화의 완화 기대
효과,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
· 한다.
③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
부서류)

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7. (생 략) <u><신</u> 설>

<u>제73조의3</u>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생 략) \_\_\_\_\_\_

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 획서

7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3(기후변화인지 기금결 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 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 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 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야 한다.

②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에 는 집행실적, 기후변화의 완화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.

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3과 같 음)